

『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2017년 7월 낙동강 체육공원내 구미캠핑장 개장에 따라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레저체험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캠핑장의 목적, 위치 및 정의(안 제1조 ~ 제3조)
- 개장일, 사용시간(안 제4조 ~ 제5조)
- 사용료, 사용료 감면 및 반환(안 제6조 ~ 제8조)
- 시설의 예약(안 제9조)
- 사용자의 준수사항, 손해배상(안 제10조 ~ 제11조)
- 시설의 사용제한(안 제12조)
- 위탁 관리 및 운영(안 제1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, 「지방공기업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
 - 「낙동강 체육공원」 내 조성된 구미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, 시설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, 캠핑수요 증가와 가족단위 레저활동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